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피도주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57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제221645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물피도주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안 제29조제1항제3호)	2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5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1. 30.

3. 회 부 일 : 2026. 2.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물피도주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안 제29조제1항제3호)

개정안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이하 “물피도주”라 함)한 경우도 구상권 행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u>사고</u>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u>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3. ----- ----- <u>사고</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 터 적용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중대한 법규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 등(공제사업자 포함)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1)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법제 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이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자가 보험을 통해 손해를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³⁾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뺑소니)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56조제10호⁴⁾에 해당하는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물피도주를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삭제함으로써,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이 물피도주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물피도주 행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사고 은폐 및 도주 유인이 존

3)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 보험회사 등의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사고 처리 비용을 물피도주 행위자가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물피도주 행위를 억제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9조제1항이 구상권 발생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거나 교통 안전상의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⁵⁾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허용하고, 그 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한 손해 전가를 허용하는 현행 보험제도의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물피도주는 인명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등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서 현행 구상권 발생 사유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구상권 발생 사유인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⁶⁾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5) 현행법 제29조제1항의 구상권 발생 사유 중 무면허운전 및 음주·약물운전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의 경우에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6)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7)에 해당하면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중범죄에 해당함.

반면,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제재가 적용되는 행위로, 형사 제재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어 물피도주가 경미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물피도주 억제라는 정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물피도주 행위가 구상권을 인정할 만큼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범칙금 인상, 보험료 할증 등⁸⁾의 대안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범칙금 인상의 경우 현행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고, 물피도주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은 현행 보험 제도 내에서도 일정 부분 구현 가능할 것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뺑소니 사고 중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다르게 해당 행위자를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상권 행사 범위를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물피도주 사고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원칙 저촉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575